

『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

나.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 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검토한다.

- 지역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 계획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4. 참고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경상북도 민방위재난관리과-8065(2005.10.26)호에 의한 조례 표준안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재해위험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및 재해 저감 계획 등을 중점 점검하여
- 각종 개발 계획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요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상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준하였음.